

**제2530호**  
2017. 07. 26.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 구 보

● **고 시**

- 제2017-56호 :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정정 고시 ..... 2
- 제2017-57호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 3
- 제2017-58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5

● **공 고**

- 제2017-55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8
- 제2017-5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2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6호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정정 고시

- 1. 중구고시 제2017-53호(2017.7.12.)로 고시한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경미한) 지정 고시』 내용 중 착오 기재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 2.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3396-572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1. 정정개요

가. 정정요지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내용 중 ‘3) 공공시설(공공청사) 조성계획’에서 설치비용 정정

나. 정정내용

구 분	정 정 전	정 정 후	비 고
설치비용	7,820,400,000원	5,256,720,000원	

다. 정정사유

- 착오 기재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7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인

지적도 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비고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425	550731.26	196706.35	450425.43	196635.47	마포구 아현동 705-9(옥상)	
9426	550682.25	196633.14	450376.43	196562.25	마포구 아현동 719	
9427	550639.60	196635.23	450333.78	196564.35	마포구 아현동 87-7	
9428	550562.90	196656.71	450257.07	196585.82	만리동2가 218-125	
9429	550603.96	196902.91	450298.14	196832.03	만리동2가 6-5	
9430	550501.43	196971.45	450195.60	196900.56	만리동2가 33-1	
9431	550263.67	196664.13	449957.84	196593.25	마포구 아현동 386-72(옥상)	
9432	550314.73	196629.45	450008.90	196558.56	마포구 아현동 386-78	
9433	550393.66	196717.03	450087.84	196646.14	만리동2가 218-38	
9434	550442.42	196789.31	450136.59	196718.42	만리동2가 171-11	
9435	550593.69	196841.36	450287.88	196770.48	만리동2가 37	
9436	550643.05	196790.12	450337.24	196719.24	만리동2가 48-16	
9437	550695.01	196755.53	450389.18	196684.65	만리동2가 1-22	
9438	550713.22	196724.15	450407.39	196653.27	만리동2가 1-4	
9439	550546.39	196713.46	450240.55	196642.57	만리동2가 40-8	
9440	550512.89	196709.82	450207.05	196638.92	만리동2가 39-15	
9441	550499.57	196740.46	450193.72	196669.56	만리동2가 176-81	
9442	550474.66	196762.06	450168.81	196691.16	만리동2가 176-106	
9443	550418.86	196698.69	450113.04	196627.80	만리동2가 218-97	
9444	550370.81	196697.09	450064.99	196626.20	만리동2가 218-98	
9445	550309.87	196676.72	450004.04	196605.83	만리동2가 231-65	
9446	550283.34	196676.63	449977.51	196605.74	만리동2가 231-66	
9447	550232.59	196670.85	449926.76	196599.97	마포구 아현동 393-35	
9448	550301.59	196742.18	449995.75	196671.29	만리동2가 226-1	
9449	550328.21	196771.47	450022.38	196700.58	만리동2가 222-1	

지적도근 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비고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450	550355.68	196809.15	450049.85	196738.26	만리동2가 215-2	
9451	550368.59	196781.08	450062.76	196710.19	만리동2가 210	
9452	550353.67	196762.74	450047.84	196691.85	만리동2가 210-3	
9453	550389.62	196750.88	450083.79	196679.99	만리동2가 218-26	
9454	550420.11	196755.16	450114.28	196684.27	만리동2가 176-138	
9455	550443.22	196813.75	450137.39	196742.86	만리동2가 171	
9456	550454.05	196848.35	450148.22	196777.47	만리동2가 176-180	
9457	550445.59	196880.62	450139.76	196809.73	만리동2가 179-6	
9458	550679.52	196675.84	450373.69	196604.96	만리동2가 44-5	
9459	550658.87	196670.50	450353.04	196599.62	만리동2가 44-5	
9460	550633.26	196650.33	450327.44	196579.45	만리동2가 47-18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7년 6월 14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8호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목 적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범구역에서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사 업 명 : 서애로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개선사업

### 3. 위치 및 규모

- 퇴계로42길 및 서애로 일부 점포 48개 점포
- ※ 사업구간 및 개선대상 점포수는 추진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가능

### 4. 사업내용 : 형광등 간판을 LED 간판으로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

### 5. 사업기간 : 2017년 6월 ~ 2017년 12월까지

### 6. 사업방법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자율협정 추진

### 7. 소요예산 : 120,000천원(구비 60,000천원 국비 60,000천원)

- 1개 점포당 설치비의 2,500천원 이내 지원하고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1업소 당 2,500천원 이내 제작설치비용 지원
- 지원비의 초과분은 점포주 부담
-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간판으로 개선비 지원
- 간판 디자인 및 건물외관 마감비 포함
- 추후 개선대상 점포수와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비가 증감될 수 있음

### 8. 추진내용

- 업소 특성에 맞는 간판디자인 구현 및 조화로운 간판배치로 간판개선사업 추진
-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과 타이머스위치 설치 등으로 전기소모 최소화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범위내에서 간판수량, 규격 및 디자인 등을 제작·설치
-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와 협약을 통한 주민자율주도로 간판개선 추진
  -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내 건물주, 점포주, 전문가 등으로 「간판개선 주민위원회」구성·운영
  - 대상지역 주민 자발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중구청은 행정적 지원

## 9.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구 분	간 판 설 치 기 준
총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판수량 : 1업소 1간판</li> <li>※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 가능</li> <li>1.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0.2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 (중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함)</li> <li>2.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 간판</li> </ul>
가로형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시형태 : 판류형 또는 입체형</li> <li>○ 설치위치 : 3층 이하 정면</li> <li>○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 : 당해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최대 10m 이내)</li> <li>▶세로 : 판류형 80cm 이내, 입체형 45cm 이내</li> </ul> </li> </ul>
돌 출 간 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위치 : 건물의 측단에 설치하되 일정규격으로 통일 (건물폭이 20m 이상일 경우 양측단 가능)</li> <li>○ 표시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 아랫부분과 지면의 간격은 3m 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이상)</li> <li>▶돌출폭은 벽면에서 1m 이내, 세로크기는 3.5m 이내</li> </ul> </li> </ul>
창문이용 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층 이하의 창문 혹은 출입문에 자사광고 한정, 폭 20cm이하</li> <li>○ 편형 혹은 입체형 제작시 1층 자사광고에 한정, 면적 0.18m 이하</li> <li>○ 유리벽면 건물의 경우 창문 안쪽으로 20cm 이격하여 설치</li> <li>○ 건물의 벽면이 유리 벽면 등 일때 광고는 2층 이하의 자사광고 한정, 세로 폭 45cm, 길이 3m, 창문면적 1/4 이내</li> </ul>
기 타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소당 간판수량을 초과하는 광고물과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철거</li> <li>○ 대상건물의 간판은 LED조명(KS 인증제품)으로 하고 절전용 on-off 타이머 스위치 부착 및 고효율 인증문자간판용 LED 모듈 사용</li> <li>○ 검정 또는 빨강(주황, 핑크 포함), 노랑 등 원색 바탕 간판 지양</li> <li>○ 노후 건물 외벽 대한 마감 처리 방안 강구(외벽 보수, 청소등)</li> </ul>

※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준용하여 경관상의 고려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 중구 조례 개정시 그 사항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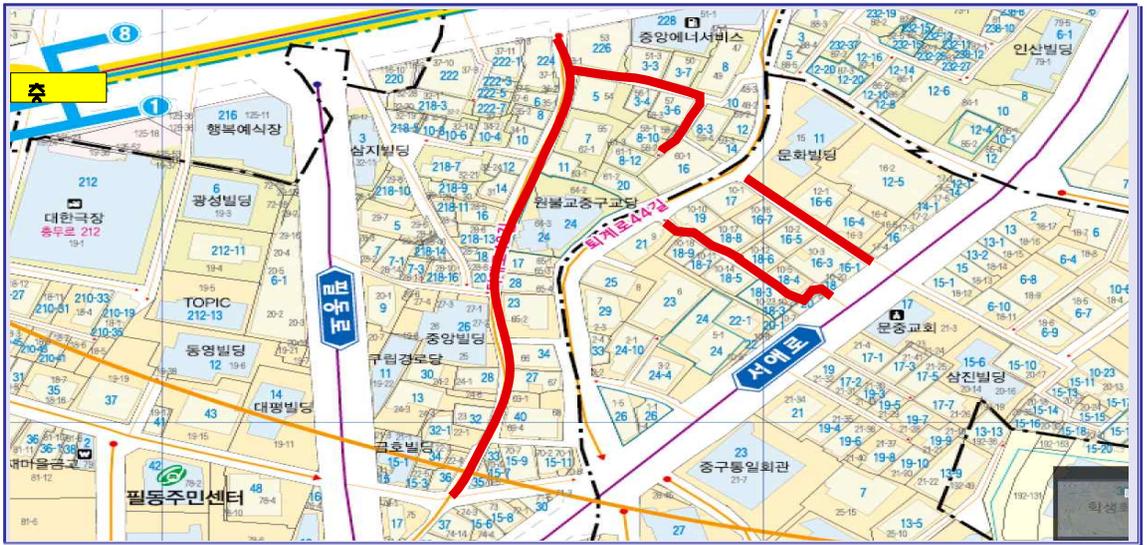
9. 허가 및 신고

-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m<sup>2</sup>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10. 광고물 등의 심의

- 광고물 등의 규격, 위치, 색깔, 디자인 등에 관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표시 할 수 있다.

11. 위치도면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3. (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현장사진



퇴계로42길 및 서애로 일대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556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되면서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이 규칙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및「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 나. 부과와 취소 및 변경, 구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총량,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 다.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로 17, 중구청(여관동), 전화 : 02-3396-5103, FAX : 02-3396-8695, E-mail : charmi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3)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과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년도    기분(월분)    세를 다음과 같이 취소(경정)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결 재				

### 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	연도/ 기분	당초		취소		경정		차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 (주) 1. 지역자원시설세 등 구세에 병기·부과되는 시세는 구세 취소·경정 시 함께 결정한다.  
 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

일련 번호	지방세환급금 내역										결재			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								결재			지급필통지사항			
	연도	책호 기본 번호	세목	지방세환급금			환급대상자		과오납 연월일	사유	담당 자	팀 장	과 장	조정 연월일	지방세환급가산금			총당	계좌 경정	명령 번호	지급 명령액	담당 자	담 장	과 장	일자	수령자	대조자 인	
				계	본세	가산 금	성명	주 소							지방세 환급금	지방세 환급 가산금	계											
월계																												
연도계																												
총 누계																												

구분	지방세환급금 결의액	총당액	계좌 경정액	지급명령액 ①	반송분 ②	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	지급 및 통지액 ④	차감미지급액 ③ - ④	결재			
전월까지 누계												
당월계												
연도계												
총 누계												

※ 전산처리하는 경우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b>지방세환급금 총당 결의서</b>												
결재		발				의			년	월	일	(인)
징수관		징 수 부 등 재							년	월	일	(인)
과 장		지 방 세 환 급 금 정 리 부 등 재							년	월	일	(인)
팀 장		총 당 통 지 서 발 부							년	월	일	(인)
담당자		통 지 서 번 호							년	월	일	(인)
총당금액 (금 _____ 원) (₩ _____ )												
세 입 항 목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환급금 총액	과오납 연월일	환급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총당액 총액)											
총 당 내 역	구분	세입 연도	세입과목				미납 총액	총당액	납세의무자			
			관	항	목	과세번호			주소	성명		
	총당 후 미수납(총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요									수납부정리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557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7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및「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제4조)
- 나. 구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구세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14조~제16조)
-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 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세무1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여관동), 전화 : 02-3396-5103, FAX : 02-3396-8695, E-mail : charmio@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3396-5103)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보통징수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구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세액·소속연도·세입과목·납세의무자·납부기한·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부과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과부서의 장은 구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로부터 구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구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 구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구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구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특별시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구청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구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세 체납액은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구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결손처분)**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손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결손처분표(갑, 을)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결손처분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17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의 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 명단공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울특별시중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고액·상습채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font-size: 2em; margin-right: 10px;">[</div>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input type="checkbox"/> 부과  <input type="checkbox"/> 신고납부  <input type="checkbox"/> 감액  <input type="checkbox"/> 결손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left: 1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20px; font-size: 1.5em; font-weight: bold;">결정결의서</div>						
징수관			발의	년 월 일 (인)		
			징수부 등재	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			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 고지서 발부	년 월 일 (인)		
팀장			납액 통지 제호	년 월 일 (인)		
담당자			납기	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입과목	관	세입연도		년도 세입		
	항	결정내용	본세	가산금	계	
	목	세액				
		가산세				
		결정액				
결정세액	금 원(W )					
납세인원	시 구 번길 외 명					
적요	년도 월 분 세				수납부 등재	(인)
					환급금 정리	(인)
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수 납 부

과세번호	납세자명	징수결의일	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 주민(법인)등록번호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결손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b>지방세 체납액정리표</b>												
과세물건				전화번호								
				성명								
상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이전      년   월   일											
주소												
세목	연도	납기	과세번호	독촉		체납액						합계
				발부일	납부기한	1차	2차	3차	4차	5차	...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체납자 주소지 약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체납정리보고			처리전망	조사자
담당자	팀장	과장		
				(인)
<b><u>주거 확인</u></b>			<b><u>재산 확인</u></b>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b><u>생활상태 확인</u></b>			<b><u>재조사 확인</u></b>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위 사실을 재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b>결 손 처 분 표</b>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손처분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체납자	주소				상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인)
							:			(인)
					확인자	(과 장)	:			(인)
							: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 결 손 처 분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호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 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구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증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명세

### 1. 개인 공개 대상자

#### 년 공개대상자 명단(개인)

(단위 : 백만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 2. 법인 공개 대상자

#### 년 공개대상자 명단(법인)

(단위 : 백만원)

번호	법인			대표자			총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요지
	법인명	업종	소재지	성명	나이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